

## 국내 판매를 목적으로 구매한 상품을 수출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

- Q** 영세율 및 매입세액 공제에 대한 질의 드립니다.  
 A사는 10월 국내판매 등을 목적으로 B사로부터 제품을 1,000개 구입하였습니다. 11월 중 500개를 해외에 수출을 하게 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1,000개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갑설) 영세율이 발행되지는 않았지만 수출건에 해당하므로 500개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을설) 세법은 소급하지 않으므로 10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당시 수출에 대하여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 A** 구입한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하지 않고 해외에 수출하였다더라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직무발명보상금을 퇴직자(사망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과세처리 문의

- Q** 퇴직자에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에 의거 기타소득으로 1년 5백만원까지 비과세하며, 5백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 및 주민세로 22% 과세 처리하고 있습니다.  
 퇴직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에게 직무발명보상금을 승계 지급하는 경우 상속인의 기타소득으로 과세 및 신고를 해야할 것 같은데 소득구분 및 과세처리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A** 현행 세법에는 종업원등이 퇴직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500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직무발명보상금의 상속과 관련되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데 모든 권리와 의무가 상속된다면 지금과 동일하게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양도담보부채무변제

**Q** 당사는 법인이고 채권자로서, 금전소비대차계약한 채무변제 불이행으로 채무자A의 양도 담보물을 양도담보부채무변제계약공정을 통해 소유권 이전한 상태입니다.

위와 같은 거래가 발생한 경우 자산, 부채의 처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Q1. 양도담보된 기계장치의 경우 취득년도가 2000년대로 표시되는데 내용연수 문의(기계 장치 10년 정액 또는 경제적 실질반영 등)

Q2. 양도담보부채무로 소유권 이전한 기계장치 계정문의(신규취득자산과 동일하게 기계 장치로 처리)

Q3. 미변제 채무와 양도자산의 변제 회계처리 문의(양도자산 채무/미변제 채무 변제 처리 가 맞는지)

Q4. 혹시 위 사례의 경우 별도로 추가될 회계처리가 있는지

**A** 채무변제불이행에 따라 양도담보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온 경우 귀사의 의견대로 신규자산과 동일 하게 기계장치로 처리하면 되며, 내용연수는 중고자산 취득과 동일하게 처리하시면 되는데 중고자산 도 기준내용연수 적용이 원칙이나 중고자산이 기준내용연수의 50% 이상이 경과된 경우에는 수정내용 연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촉탁계약직 채용시 정부지원금 수령 시 회계처리

**Q** 회사에서 촉탁계약직을 채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국가에서 주는 정부지원금을 300만 원/인당 수령하였습니다.

회사가 받는 정부지원금 수령액에 대해 회계처리 시 잡이익처리를 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촉탁계약직 분들의 급여비용에서 차감해도 되나요

**A**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받는 반환의무없는 지원금은 영업외이익이나 잡이익으로 처리하며, 촉탁직 급여 에서 차감하는 순액방법은 타당하지 않습니다.